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3-102
- 나. 제안자: 홍지광 의원 외 12인
- 다. 제안일자: 2023년 11월 17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월)

2. 제안사유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의 지원을 법제화하여 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 다. 기본계획 및 생활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라. 생활문화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0조)
- 마.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생활문화센터에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안 제12조)
- 바. 위탁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안 제14조)
- 사.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7조, 제8조

5. 검토보고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 제정안은 2023년 11월 17일 홍지광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법 제화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생활문화는 구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 구민의 문화 향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구민들의 자발성에 기반한 생활문화를 펼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하고 확충해야 할 의무가 마포구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조문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문화 사업의 지원 범위, 생활문화진흥위원회 구성,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
- 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는 “생활문화단체”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¹⁾의 “예술인”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참여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생활문화”의 정의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예술인”을 생활문화단체의 구성원으로 배제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로 사료됨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는 구청장의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문화진흥법²⁾」 제6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생활문화 사업의 지원)는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지원,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등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부터 안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9조(위원회 회의 등), 안 제10조(위원의 해촉)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을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의 경우, 이미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제주도 등이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서울시는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이 중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는 홍대 인근 청년 주택의 기부채납 공간에 조성되어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과 공연 중심으로 2020년 개관·운영되고 있음.
- 안 제13조(업무의 위탁)은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동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마포구 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됨.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 노원구, 강동구 3개 구에서 생활문화 진흥에 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마포구 내 생활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저변확

대, 구민의 건강한 생활문화발전에도 기여함은 물론, 마포구에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연계하면 업무추진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생활문화 관련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마포구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마포문화재단’에서 운영³⁾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영역 및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3) 마포문화재단 : 구민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붙임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 (연중)
- 사업규모: 7개 사업, 연간 2,400여명 참여
- 소요예산: 423,896천원(시비 25,000천원, 구비 78,000천원, 재단 320,896천원)

2023 추진실적

..... (10. 31. 현재)

- 구민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 <꿈의 무대>, <꿈의 전시>
 - 공모를 통해 6개 장르 53개 동아리 선정, 구민 821명 참여
 - 구민 생활예술 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4회 운영, 250명 참여
 - 꿈의무대 53개 동아리가 참여하는 공연(10.7~11.18) 13회, 전시(28일) 6회 추진
 - 10월 내 7회 공연 개최, 2,110명 관람
 - 마포지역 내 카페 5개 내 작은 전시 개최
- 마포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 16개 기관 연계, 976명 참여
 - 학교 및 학교밖 문화예술교육 <꿈타래 엮기>, 13개 학교 및 기관, 920명 참여
 - 공모로 예술프로젝트 선정(10개)하여 학교/기관별 매칭, 맘스아트살롱 운영
 - 청소년 활자 문해력 향상을 위한 <리터러시 M>, 3개 기관, 40명 참여
 - 한자 연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취약청소년 대상 빅밴드 인큐베이팅, 4개 밴드 16명 참여
- 마포 청장년 대상 마포사진학교 : 3개반 84명 참여
 - 장애인, 환경 등 주제 야외출사 등 사진교육 20회 운영
- 마포 직장인 및 감정노동종사자 대상 예술치유, 297명 참여
 - 돌봄종사자, 경비, 미화원 등 감정노동종사자 예술치유 3개 프로그램 197명 참여
 - 직장인 대상 싱잉볼 음악 명상, 윤한의 수면음악 2회 운영, 100여명 참여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